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 . . . (제 회)	

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전문건설업 주력분야 추가 등록시 등록·심사기준에서 자본금 항목을 제외하여 건설사업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, 제1종 가스시설공사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·변경공사 중 일정규모 이하의 레인지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·변경공사를 제2종 가스시설공사의 업무내용에 추가하여 소규모 시설공사에 대한 시공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,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예시를 현실화하며, 건설업 양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갖추지 못한 경우를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의 예외로 인정하여 건설업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추가 등록 시 등록기준 중 자본금기준을 제외한 기술능력,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추도록 규정(안 제7조의2)
- 나.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의 예외 적용 사유 명확화(안 제35조제2항 및 별표 5)
- 다.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예외에 해당하는 일시적인

등록기준 미달 사유에 건설업양도신고 수리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갖추지 못한 기간이 수리일로부터 50일 이내인 경우를 추가(안 제79조의2)

라.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처분 권한 명확화(안 제86조)

마. 가스·난방공사업종의 제2종 가스시설공사의 업무내용에 “도시가스 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14,400kcal/h 이하의 레인지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·변경공사”를 추가(안 별표 1)

바. 시공기술의 발전 등 건설 현장 변화를 반영하여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예시 규정 정비(안 별표 1)

사.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부과하는 영업정지 기간 규정(안 별표 6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2제2항 전단 중 “기준”을 “기술능력, 시설 및 장비기준”으로 한다.

제35조제2항 단서 중 “시공기술상 특성을 고려하여”를 “종류, 규모, 시공 기술상 특성 및 현지실정 등을 고려했을 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”로 한다.

제79조의2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법 제17조에 따라 건설업양도신고가 수리된 경우로서, 제13조제1항 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갖추지 못한 기간이 수리일로부터 50일 이내인 경우

제86조제1항제9호 단서 및 같은 항 제10호 단서 중 “발생한”을 각각 “발생하여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·운영한”으로 한다.

별표 1 제2호다목1)나)(3)의 건설공사의 예시란 중 “굴뚝·탱크·수문설치·셔터설치·옥외광고탑·격납고문·사다리·철재프레임·난간·계단”을 “굴뚝·탱크·수문설치·셔터설치·옥외광고탑·격납고문·사다리·철재프레임·난간·계단·캐노피·출입차단기”로 하고, 같은 목 2)

나)의 업무내용란 중 “부품”을 “부품, 입체 구성재”로 하며, 같은 호 라목 1)의 업무내용란 중 “칠하는”을 “칠하거나 뿔칠하여 마감하는”으로 하고, 같은 목 3)의 건설공사의 예시란 중 “건물외벽”을 “건물내벽·외벽·바닥”으로 하며, 같은 란 중 “돌붙임공사”를 “돌붙임공사(석재타일 포함)”로 하고, 같은 호 마목2)의 업무내용란 중 “야외의자·퍼걸러(pergola) 등의 조경시설물”을 “놀이시설 등의 조경시설물, 수경시설 등의 조경구조물”로 하며, 같은 호 사목나)의 건설공사의 예시란 중 “일반비계공사, 발판가설공사”를 “일반비계공사, 시스템비계공사, 발판가설공사, 추락·낙하방지시설공사, 분진·방진망공사”로 하고, 같은 호 자목의 건설공사의 예시란 중 “도상공사”를 “도상공사, 고무차륜 철도차량 주행로공사”로 하며, 같은 호 파목1)의 건설공사의 예시란 중 “급배수·환기·공기조화·냉난방·급탕·주방·위생·방음·방진·전자파차단설비공사”를 “급배수·환기·공기조화·냉난방·급탕·주방·위생·방음·방진·내진설비공사, 전자파차단설비공사”로 하고, 같은 란 중 “배관·기계기구설치공사”를 “배관·기계기구설치공사·경상정비공사”로 하며, 같은 란 중 “지열냉·난방”을 “지열·수열·연료전지(전기공사는 제외한다)의 냉·난방”으로 하고, 같은 란 중 “냉동냉장설비공사, 집진기공사”를 “냉동·냉장·저온 설비공사, 집진기공사, 자동크린넷설치공사, 염수분사·자동살수장치공사”로 하며, 같은 호 하목1)다)부터 바)까지를 각각 라)부터 사)까지로 하고, 같은 란에 다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)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14,400kcal/h 이하

의 레인지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·변경공사

별표 5 비고 2.부터 6.까지를 각각 3.부터 7.까지로 하고, 2.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위 표에서 “기술사, 기능장, 기사, 산업기사”란 “해당 직무분야”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말한다.

별표 6 제2호가목12)에 라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) 가) 내지 다) 외의 경우	2개월	2개월	2개월	
-------------------	-----	-----	-----	--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가스시설공사 업무내용 변경에 관한 적용례)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가스시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(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)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조의2(주력분야의 등록 및 말소) ① (생략) ②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<u>기준</u> 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추가등록을 신청해야 한다. 이 경우 주력분야 등록신청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. ③·④ (생략)	제7조의2(주력분야의 등록 및 말소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기술능력, 시설 및 장비기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③·④ (현행과 같음)
제35조(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) ① (생략) ②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야 한다. 다만, 건설공사의 <u>시공기술상</u> 특성을 <u>고려하여</u> 도급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할 건설기술인의 자격종목·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. ③ ~ ⑤ (생략)	제35조(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종류, 규모, 시공기술상 특성 및 현지실정 등을 고려했을 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</u> ----- ----- ----- 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79조의2(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) 법 제83조제3호 단서에서 “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	제79조의2(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)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신설>	4. 법 제17조에 따라 건설업양도신고가 수리된 경우로서,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갖추지 못한 기간이 수리일로부터 50일 이내인 경우
제86조(권한의 위임 등)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한다.	제86조(권한의 위임 등) ①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8. (생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
9. 법 제82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. 다만, 법 제82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67조제3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처분 권한은 제외	9.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발생하여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국

한다.	<u>토교통부장관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·운영한 ---.</u>
9의2. (생략)	9의2. (현행과 같음)
10. 법 제83조에 따른 건설업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. 다만, 법 제83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67조제3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처분 권한은 제외한다.	10.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발생하여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·운영한 ---.
10의2. ~ 13. (생략)	10의2. ~ 13.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3515